

정 관

주식회사 두산

목 차

제 1 장	총	칙	3
제 2 장	주	식	5
제 3 장	사	채	11
제 4 장	주	주 총 회	12
제 5 장	이사,	이사회	13
제 6 장	감사	위원회	16
제 7 장	계	산	16
	부	칙	18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주식회사 두산(이하 "이 회사"라 함.)라 말한다. 영문으로는 'DOOSAN CORPORATION'이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회사는 하기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동산,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
2. 문화사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사업에 투자
3. 수출입무역업 및 동 대행업, 물품매도 계약서 발행업
4. 유기질비료, 복합비료의 제조, 가공 및 판매업
5. 정밀화학제품, 휘놀 및 에폭시 수지, 케미컬 관련제품, 합성수지 및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, 판매 및 수출입
6. 의약품, 의료기기, 의약부외품의 제조, 가공 및 판매업
7. 도매업, 상품중개업, 일반소매업, 종합소매업, 특수소매업, 수입품 도매 및 소매업
8.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, 판매, 유지보수 및 CONSULTING 업
9.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컨설팅 및 전문적서비스업
10. 소프트웨어 개발, 판매, 임대업
11.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업
12. 부가통신, 이동통신 및 특정통신 사업
13. 컴퓨터, 통신 및 방송관련기기의 임대, 판매, 서비스업
14. 교육서비스업
15. 기계설비공사업
16. 강구조물 공사
17. 감속기 제작 및 설치
18. 클레드 및 언클레드 휘놀 및 글라스 에폭시 라미네이트, 기타 전기적 라미네이트, 기타 전자부품, 소재 및 부속품의 제조, 판매 및 수출입
19. 전기.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
20.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
21.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
22. 보관 및 창고업
23.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
24. 시설, 설비, 기계, 기구, 건설장비, 운송용구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의 장단기 대여 및 투자
25. 소프트웨어 자문, 개발, 공급업
26. 데이터베이스 운영 서비스업
27. 용역 및 군납업

28. 일반화물자동차 및 특수 컨테이너자동차 운송, 보세운송사업
29. 화물알선 및 해운대리점업, 복합운송주선업, 화물터미널업
30. 토목, 건축 등의 일반공사 및 포장, 조경 등의 특수공사 수급시공업
31. 전기공사업, 소방설비공사업 및 수도위생, 난방, 도장 등 제건설공사 수급시공업
32. 건설자재, 레미콘 및 아이콘 제조판매업
33. 전기 통신 공사업
34. 특정(일반포함) 폐기물 수집, 운반업
35. 종합건설 기계 대여업
36.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
37. 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 관련사업
38. 판매대행업
39.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·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사업 내용의 지배·경영 지도 및 육성
40. 브랜드,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
41. 별정통신사업
42. 무역의 알선업
43. 부동산관리업
44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
45. 건축물 일반 청소업
46. 주차장 운영업
47.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
48.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
49. 관리비 임대료 및 공과금 징수 대행업
50. 소방시설 유지관리업
51. 전기 안전관리대행업
52.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
53. 사업지원 서비스업
54.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, 설비의 개발, 제조, 판매, 서비스업
55.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, 컨설팅 사업
56.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입업
57.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
58.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타 설치, 유지보수, 임대 및 부대사업 일체
59. 유무선 원격자동 계측 및 제어시스템 개발, 제조, 판매업
60. 원격조정장치(디지털신호처리방식)의 개발, 제조, 판매업
61. 전력변환장치(스위칭 신호방식)의 개발, 제조, 판매업
62. 가스기기용품 개발, 제조, 판매업

63. 무형재산권의 중개알선 및 임대업
64. 면세판매업(보세판매장업)
65. 관광토산품, 관광기념품 제조·판매업
66. 보세창고업
67. 통신판매업
68. 식음료 및 주류 판매업
69. 관광객 이용시설업
70. 관광 음식점업
71. 환전 및 보관업
72. 섬유 및 의류, 가방류,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
73. 상품권판매업
74. 체력단련시설 운영업
75. 자동판매기 운영업
76.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
77. 기타 전기각호에 관계된 사업 및 필요 또는 유익한 사업의 영위 및 투자

제 3 조(본점 및 지점 등의 소재지)

-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광고방법)

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doosan.com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역주로 한다

제 6 조(일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(주식의 종류)

-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.

-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
제 7 조의 2(배당우선주식)

-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“우선주식”)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%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단,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3(전환주식)

-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(이하 “전환주식”)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
-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조의 4(상환주식)

-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(이하 “상환주식”)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(있는 경우에 한함)으

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이자율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
-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단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,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.
-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,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⑦ 제 7 조의 3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5(의결권배제주식)

-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,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
제 8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9 조(신주인수권)

-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

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-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 - 3.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5.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,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9 조의 2(일반공모증자 등)

-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(DR)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,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9 조의 3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이 회사는 임직원(이사, 감사, 피용자를 의미하며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 감사, 피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.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다. 단,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

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.

-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·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- 1. 최대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수관계인(상법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). 다만, 당해법인의 임원(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.)는 제외한다.
 - 2. 주요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(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.)는 제외한다.
 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.
 - 4.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.)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
 - 2.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10 년까지의 기간 중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.
-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(정년을 제외한다)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⑨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가 있다.

1. 당해 임,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2. 당해 임,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3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0 조(동등배당)

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

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

제 12 조 (삭제)

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②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

제 3 장 사 채

제 14 조(사채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

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5 조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의 발행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

제 15 조의 2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

-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 발행일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5 조의 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6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

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17 조(소집시기)

-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 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8 조(소집권자)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

제 19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제 4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 20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1 조(의장)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.

제 22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3 조(주주의 의결권)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.

제 24 조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 이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5 조(의결권의 불통일 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,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6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7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27 조의 2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

-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 1 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, 회의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8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

제 5 장 이사, 이사회

제 29 조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, 15 명 이내로 하고 그 중 일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 한다.

제 30 조(이사의 선임)

-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의 선임의 의결권은 제 23 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하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.

제 31 조(이사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32 조(이사의 보선)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33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, 부회장, 사장을 선임하고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34 조(이사의 직무)

-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34 조의 2(이사의 보고의무)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(삭제)

제 36 조 (삭제)

제 37 조(이사회외 구성과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
- ③ 이사회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- ④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 정기이사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매 3 월에 1 회 소집,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, 개최한다.

제 38 조(이사회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동시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39 조(이사회 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9 조의 2(위원회)

-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 -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- 2. 감사위원회
 - 3. 내부거래위원회
 - 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7 조(제 4 항 제외), 제 38 조 및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제 38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

제 40 조(이사의 보수)

-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(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

포함)에 따른다.

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 40 조의 2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9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
제 40 조의 3(감사위원회의 직무)

-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내지 제 4 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0 조의 4(감사록)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계 산

제 41 조(사업년도)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.

제 42 조(재무제표의 작성비치)

-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 서류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대차대조표
 2. 손익계산서
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2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3 조(이익금의 처분)

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
제 44 조(이익배당)

-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(제 7 조의 3 의 전환주식, 제 7 조의 4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

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4 조의 2(주식의 소각)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(단,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 46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.)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

제 44 조의 3(분기배당)

-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
-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 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 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 3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 4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 5.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 6. 당해 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

제 45 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
-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부칙(2016. 3.25)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3.29)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, 제 11 조, 제 12 조, 제 15 조의 3 및 제 16 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3.30)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3.29)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3.29)

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